

제1장

..

학교폭력의 소개





다 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한국인들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온 국민이 몰입하며 또한 그것에 대해 상상을 초월한 힘과 에너지를 쏟아 붓는 사회적 열정과 응집력이 있다는 것이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난 이야기이지만, 2002년 당시 월드컵 응원문화를 통해 나타났던 우리 민족의 열정과 응집력은 CNN과 BBC를 비롯한 세계 주요 뉴스매체들이 앞을 다투어 보도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은 본 장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학교폭력 분야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경고하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1990년 대 이후 집단따돌림을 대표하는 ‘왕따’ 또는 ‘은따’ 등의 새로운 단어들 이 언론을 통해 등장하였고 이에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전 사회적으로 고민한 것은 불과 수년 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011년 12월경 대전과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연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상황을 잠시 되짚어 보면, 동료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해 학생들의 치밀하고 잔인한 폭력행동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태도, 이에 비해 학교폭력에 대한 너무나 미숙한 학교의 대응방법 그리고 자식을 처참하게 잃어버린 피해 가정의 혹독한 슬픔이 이 사건들로 인해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마치 2002년 월드컵 때의 사회적 관심과 열정이 학교폭력에 대해 쏟아졌고, 그 결과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방안과 대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2012년 초 역사상 최초로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해 실시되었다. 곧 이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국가 수준의 대책이 국무총리를 통해 발표되었다.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 대책에 의해 학교폭력 실태조사(6개월마다), 복수 담임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신설 및 운영, 체육교육의 강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의무화, 상담인력 확충, 117(학교폭력

긴급번호) 신고체계, 교원양성 기관에서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 신설 등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일선 학교에서 실시되었다.

우리 사회가 거쳐 가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1980년대 노르웨이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노르웨이에서는 1982년 말 또래들의 집단 괴롭힘에 못 이겨 세 명의 학생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대중매체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이 사건들로 인해 노르웨이 전반에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이듬해인 1983년부터 국가차원에서 학교폭력 방지 캠페인과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노르웨이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특히 Olweus가 중심이 되어 개발한 OBPP(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는 노르웨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노르웨이를 비롯한 핀란드, 영국, 프랑스의 유럽 지역,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지역, 그리고 일본과 홍콩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집중력과 폭발력은 가히 세계 최상위라 할 수 있겠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최근 학교폭력에 관련된 다양한 서적과 출판물 등이 발행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한국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학교폭력 예방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우리와 유사한 사회·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권 국가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좋은 예방 및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 책은 우리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태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학교폭력 관련 이론 및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 이 책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강의 교재로 쓰였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강의를 담당하고 있던 차에 강의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담겨져야 가장 효과적인 강의가 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이 책의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었다.
- 이 책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한 교사

및 예비교사들을 위해 쓰였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교사이고, 학교폭력 예방책을 궁극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가 역시 교사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사의 역할에 반해 아직까지 일선 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 서적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설명하게 될 각 장의 내용들은 학교, 학급 등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 이론적 설명과 더불어 각종 통계자료 및 연구 결과 등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과 관계된 이론들을 설명함에 있어 가능하면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자료 또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피해 아동은 학교 또는 학급에서 예방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이 책은 시작되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문가들과 교사들이 함께 노력하다면 학교에서 폭력으로 상처받고 두려움에 떠는 학생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들의 미래와 꿈을 위해 안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저자들은 지지한다.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학자들마다 학교폭력의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절에서는 먼저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집단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교사들이 꼭 인지해야 할 법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것이다.

1) 집단 괴롭힘

집단 괴롭힘(bullying)은 괴롭힘, 따돌림, 또는 집단 따돌림 등으로 불린다. 사실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또래들로부터 조직적인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자살이라는 최악의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사소한 갈등에서 발생한 한두 번의 단순

한 폭력 때문에 이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 이들 거의 대부분은 한 명 이상의 또래들에게 치밀하고도 무자비한, 그리고 수없이 반복되는 폭력의 의해 희생되었다. 말하자면 고의적이고 집단적이며, 반복적인 폭력에 노출된 것이다. 학교폭력 연구의 선구자인 Olweus는 오래전부터 이 집단 괴롭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는 집단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집단 괴롭힘이란 한 명의 학생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부정적 행동에 노출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부정적 행동이란 공격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행동에는 협박, 위협, 놀림, 별명 부르기 등의 언어적 폭력과 때리기, 밀기, 차기, 감금하기 등의 신체적 폭력과 그리고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속하지 않지만 상대방을 자극할 목적으로 하는 인상 찌푸리기, 혐오감을 일으키는 몸짓하기, 따돌리기, 무시하기 등의 행동을 포함한다(Olweus, 1993, p. 9).

Olweus의 정의에 따르면 한두 차례로 끝나는 일시적인 학생들 간의 말다툼이나 싸움은 집단 괴롭힘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차례 친구들의 폭력에 시달려온 학생이 어느날 갑자기 수업 중에 가해 학생에게 보복 행동을 한 경우 이는 집단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힘과 덩치가 비슷한 학생끼리 여러 번 신체적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서 이 역시 집단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안이 집단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집단 괴롭힘 행동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특징은 힘의 불균형, 반복성, 의도성이다.

(1) 힘의 불균형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폭력에는 이를 행사한 가해 학생과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 사이에 힘이 불균형이 존재한다.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월한 위치는 덩치와 같은 신체적 능력, 지적 능력, 우수한 성적, 연령, 경제적 지위, 또래 지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힘의 불균형이 존

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들이 휘두르는 폭력에 대해 쉽게 저항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2) 반복성

집단 괴롭힘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벌어지는 폭력을 의미한다. 집단 괴롭힘에 노출된 학생들은 격주 단위로 또는 일주일 단위로 심하면 매일매일 폭력에 시달리기도 한다. 끊임 없이 반복되는 집단 괴롭힘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마침내 어떠한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3) 의도성

집단 괴롭힘은 뚜렷한 의도를 가진 폭력을 의미한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편을 초래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력은 집단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에서 본 것처럼 집단 괴롭힘은 힘이 우세한 가해 학생 한 명이 또는 여럿이 힘이 약한 피해 학생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공격적 행동이다.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견딜 만한 건강한 자아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학생들이 만약 집단 괴롭힘에 노출된다면 이들은 신체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스스로 반항하거나 저항할 만한 힘이 없는 상태에서 고의적인 폭력이 수없이 반복된다고 가정해 보자.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든데 이러한 지옥 같은 날들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집단 괴롭힘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며 그 피해 정도가 극심한 폭력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학교폭력 관련 종사자와 연구자들은 무엇보다도 집단 괴롭힘에 주목하고 있다.

2) 학교폭력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폭력(school violence)을 예방할 목적으로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

고 있다. 이 법률은 학교폭력의 정의를 비롯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조치 등 학교폭력 사안 사전조치 및 사후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법률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학교폭력의 정의 및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이 조항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적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표 1.1>은 중요한 용어들의 의미를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밝힌 반면 상해를 비롯하여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등은 뚜렷한 의미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상해를 비롯한 다른 용어들이 형법상 용어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형법¹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률용어사전용어²를 참조하기 바란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보면 상해의 경우 심리·정서적 증상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간접적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도 폭력에 해당하는 사실도 기억해 둘 만하다. 협박과 공갈의 차이도 이해해 두면 좋겠다. 공갈이 좀 더 죄질이 무거운 것을 알 수 있다. 감금에 비해 약취와 유인은 생소한 용어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자신 또는 누군가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약취와 유인에 해당한다. 따돌림은 앞서 설명한 집단 괴롭힘과

1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8%95%EB%B2%95#iBgcolor4>

2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71>

표 1.1 법률적 용어 정리

용어	의미
상해	상대방 신체에 상해를 내거나 정신적 기능을 훼손하여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병적 상태를 증가시킨 행위를 의미한다. 타박, 골절과 같은 신체적 외상뿐 아니라 수면장애, 섭식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일으킨 경우도 상해에 포함된다.
폭행	상대방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난폭한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물건에 대해 난폭한 힘을 사용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동이면 폭행에 해당한다.
협박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등에 대해 손해를 끼치겠다고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손해에 대한 구술 통지, 문서 통지, 타인을 통한 통지, 암묵적 통지 등은 고지 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협박에 해당한다.
감금	상대방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취와 유인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두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감금이 한정된 장소에서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데 반해, 약취와 유인은 장소적 제한 없이 실력적 지배를 설정하는 데 본질이 있다.
공갈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돌림	학교 내외에서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2항).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3항).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소 내용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법률 용어들을 자세히 제시한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각각의 폭력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혹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사안 처리 시 확실한 법률적 근거를 피해 및 가해 당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좀 더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보자.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안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법률은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부근의 학원,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발생한 사안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록 학교 내는 아니지만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학여행지, 체험 학습지 및 야외활동지에서 발생한 사안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의 피해 대상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이다

법률에서는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초·중등교육법’ 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따라서 대학생과 일반인은 학교폭력의 피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학생이 대학생, 일반인 및 교사를 폭행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본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는 가해 학생에게는 형법 또는 소년법이 적용된다. 반면 학생이 대학생, 일반인 및 교사에게 폭행

표 1.2 학교폭력의 유형별 예시(교육과학기술부, 2012)

유형	학폭법 정의	예시 상황
신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 • 폭행 • 감금 • 약취·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 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훼손 • 모욕 •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 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건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적 심부름 •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칭 빵 서툼, 와이파이 서툼,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따돌림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을 당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협박, 비난, 욕설, 놀림, 따돌림 등 언어적 및 관계적 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주목한다

학교폭력 하면 때리기, 발로 차기, 밀치기 등과 같은 신체적 폭력을 떠올리기 쉽지만 현행 법률은 협박, 모욕, 비난 등의 언어적 폭력과 무시, 거부, 비웃기 등의 관계적 폭력을 학교폭력의 중요한 범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신적 피해 역시 신체적 피해와 동일하게 학교폭력의 피해 범주에 포함시켜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예를 들면 불안, 우울, 대인기피증, 수면장애 등)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3) 집단 괴롭힘과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은 힘의 불균형, 반복성 및 의도성이 담긴 폭력이다. 이에 반해 학교폭력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표 1.2>를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단 괴롭힘을 따돌림과 동의어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학교폭력이 집단 괴롭힘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이며 집단 괴롭힘은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

집단 괴롭힘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이 집단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집단 괴롭힘으로 인정할 만한 특징들이 나타났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폭력 사안이 집단 괴롭힘이 아닌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반대로 학교폭력이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법률은 학교폭력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복도에서 길을 막고 있기에 그 학생을 밀어버린 행위, 쉬는 시간에 친구를 잠시 동안 짜러 본 행위, 카카오톡에서 장난으로 욕을 한 경우 등도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특히 피해 당사자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따지자면 학급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사건이 학교폭력인데 그것을 어떻게 모두 처리할 수 있는가라고 항변할 수 있다. 저자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이 학교 현장의 목소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 과격한 장난도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

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사소한 행동마저 학교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진행할 때 꼭 되짚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학교 또는 학급 문화가 상당히 폭력적이다

욕을 포함한 거친 말투,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놀리는 말투 등 언어 폭력이 학교현장에 난무하다. 장난이라지만 주먹, 발, 또는 몸을 이용해서 치고받는 과격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학교폭력 관계법이라는 잣대를 내밀지 않더라도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동들이 학교현장에 상당히 존재한다.

학생과 교사들이 폭력에 대하여 관대하다

다음은 과격한 장난을 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지도할 때 상황이다. 교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두 학생을 떨어뜨려놓고 위험한 장난이나 행동이 다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도하였다. 그때 주위에서 이를 목격한 동학년 학생이 이렇게 말하였다. “선

생님, 아이들은 다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또한 다음은 교사들의 대화 속에서 이따금씩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선생님, 내버려두세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요.”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학급 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과 폭력에 대하여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처하는 교사와 학교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까지도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서는 폭력을 성장기 동안 거쳐야 하는 과정쯤으로 인식하는 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다루게 될 장에서는 때때로 집단 괴롭힘과 학교폭력이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미리 알려둔다. 외국문헌들은 주로 집단 괴롭힘을 중심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용어를 굳이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 한해서 사용할 것임을 알려둔다.

제2장

..

국내외 학교폭력 실태 분석





학 교폭력과 관련된 이론과 대책들을 알아보기 전에 꼭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의 정의와 학교폭력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정의 및 중요한 쟁점들은 앞 장에서 살펴보았고 이 장에서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학교폭력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지, 가해 학생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은 무엇인지, 학교폭력이 가장 심한 연령과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더불어 이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위한 소중한 단서와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장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학교폭력 실태도 함께 소개할 것이다. 여러 나라의 실태와 함께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실태와 특징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겠다.

1. 외국의 학교폭력 실태

노르웨이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은 1980년대 이후부터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 지역은 1990년대 이후부터 실태조사가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본 장에서는 학교폭력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노르웨이를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미국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국가별 학교폭력 실태자료는 전국 단위의 표본을 가진 조사 결과 및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각 조사마다 핵심 결과를 정리하였다.

1)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Owelus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이다. 또한 학교폭력 연구를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한 결과 가장 먼저 전국 규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국가이기도 하다. 아직까지도 노르웨이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르웨이의 학교폭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개의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1980년대에 실시한 국가적 실태조사이며 다른 하나는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학생 건강 행동 조사(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 2012)이다.

(1) 국가적 실태조사

- 조사 대상 : 568,000명, 학생 전수 조사(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1983년 조사)
- 조사 방법 : 설문조사
- 조사 결과
 - 피해율 9%(52,00명)
 - 가해율 7%(41,000명)
 - 피해-가해율 1.6%(학교폭력으로 피해도 입는 동시에 가해도 하는 인원, 9,000명)
 -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체적 및 언어적 폭력을 많이 겪음
- 자세한 내용은 Olweus(1993, p. 13~14)를 참고할 것



핵심 결과

- ▶ 약 15%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관여된다.
- ▶ 남학생이 학교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2) 학생건강행동 조사(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 2010)

- 조사 대상 : 4,697명(11세, 13세, 15세 학생)

- 조사 방법 : 설문조사, 2005~2006년 실시
- 조사 결과
 - 피해율 : 11세(남학생 13%, 여학생 9%), 13세(남학생 9%, 여학생 6%), 15세(남학생 7%, 여학생 6%)
 - 가해율 : 11세(남학생 8%, 여학생 1%), 13세(남학생 5%, 여학생 1%), 15세(남학생 10%, 여학생 3%)
 - 1년에 세 번 이상 신체적 싸움(physical fight)과 관련 : 11세(남학생 23%, 여학생 4%), 13세(남학생 15%, 여학생 3%), 15세(남학생 15%, 여학생 3%)
- 자세한 내용은 학생건강행동 조사¹를 참고할 것



핵심 결과

- ▶ 11세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는 줄어드는 편이다.
- ▶ 집단 괴롭힘과 비교하여 볼 때 남학생의 신체적 싸움 발생률이 월등히 높다.
- ▶ 1983년 자료와 비교해 볼 때 학교폭력 피해율과 가해율은 다소 감소했다.
- ▶ 하지만 20년 이상의 국가적 노력을 고려해 볼 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2) 영국

영국의 학교폭력 실태의 경우 역시 두 개의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2006년에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국가 수준에서 실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이다. 일반적인 실태조사와 같이 횡단 연구의 방법으로 동일한 한 시점에서 대상자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들을 조사하여 관련 정보들을 제시한 것이다. 두 번째는 Green, Collingwood과 Ross(2010)가 작성한 보고서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종단연구 보고서는 영국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많은 흥미로운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겠다.

¹ http://www.euro.who.int/_data/assets/pdf_file/0005/53852/E91416.pdf

(I) 2006 국가 학교폭력 조사(National Bullying Survey)

- 조사 대상 : 학생 4,772명, 학부모 2,160명, 교사 323명
- 조사 방법 :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 조사 결과
 - 피해율 69%
 - 피해 유형 : 외모와 체중에 대한 놀림 56%, 신체적 폭행 50%, 사이버 폭력 7%
 - 피해 장소 : 운동장 30%, 교실 25%, 복도 21%, 급식실 14%
 - 피해 반응 : 학교에 가기 싫음 65%, 실제 5일 이상 결석 21%
 - 피해 목격 : 피해 목격률 85%, 피해 목격 시 도움을 주려고 함 82%
 - 피해 보고 : 부모 또는 교사에게 보고 75%, 교사에게 5회 이상 보고 48%, 교사가 피해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음 60%
 - 보고 결과 : 발생한 폭력 사안 중 폭력이 줄지 않음 55%, 발생한 폭력 사안 중 가해 학생에게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음 31%
 - 학생들이 제시한 효과적인 예방 대책 : 상담 53%, 또래 도움 51%,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대처 50%, 동아리 활동 45%, 명상 40%, 비난 금지 34%(중복 응답 결과)
 - 부모의 74%가 학교의 예방 대책이 효과 없다고 응답
 - 피해 학생 부모 34%는 자녀가 자살할까 봐 걱정된다고 응답
 - 교사의 83%가 학교폭력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응답
 - 교사의 68%가 학교 예방 대책이 효과 있다고 응답
 - 학교폭력에 개입한 경험이 있는 교사의 56%가 폭력이 중지되었다고 응답
 - 교사의 38%가 학생들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
-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본 조사가 온라인으로 실시됨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세한 자료는 국가 학교폭력 조사²를 참고할 것

² National Bullying Survey; http://parentingtt.files.wordpress.com/2011/05/thenationalbullyingsurvey_results.pdf 2006